

1 작업자에게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요 부위 이상 유무 점검

2 작업 전 차량의 사다리, 운반구, 아웃트리거 및 턴테이블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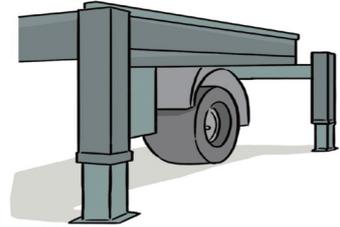
접근 금지 조치

3 이삿짐 운반 작업 반경 내에는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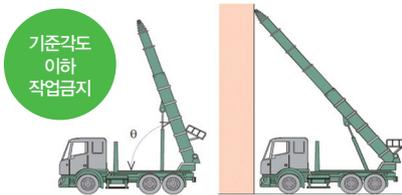
4 작업자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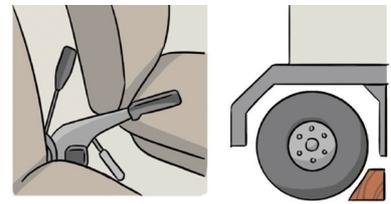
아웃트리거 설치 철저

5 차량이 전복되지 않도록 아웃트리거 수평유지 및 침하방지 조치 등 정확히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준각도 이하 작업금지  
제작사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각도 이하 작업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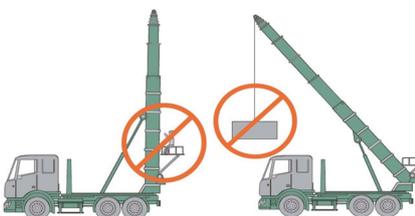
6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는 설계 기준각도 이내로 건물 벽과 고정토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차 브레이크 설치

고임목 설치

7 작업 중 항상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차량이 불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임목 등으로 고정하여야 합니다.



운반구 작업자 탑승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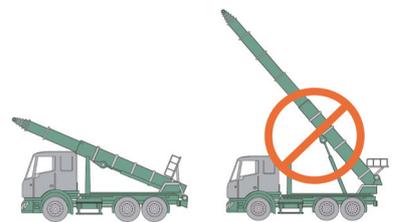
용도 외 사용금지

8 운반구에는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하고, 허용하중 내에서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사용하여야 합니다.



천동, 번개, 강풍 시 사용금지

9 감전위험이 있거나 강풍(10m/sec 이상)이 부는 경우 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장비 사용 후 확실히 고정하고 운행

사다리를 뽑은 상태로 주행금지

10 작업 후에는 사다리 붐을 원위치시키고 운반구를 고정된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합니다.

※ 참조 : KOSHA Guide (X-036-2012)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작업의 리스크확인 지침



# 봄철 이삿짐 재해예방 시작 운반용 리프트 안전확보부터!!

##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는 매분기 6시간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삿짐 운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차량 등의 이상유무 점검 등 근로자의 위험노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이삿짐 운반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는 아웃트리거,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사용하여야 합니다.
6. 이삿짐 운반 작업자에게는 개인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를 지급하고 착용상태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7.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삿짐 운반 차량은 안전한 장소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정차 하여야 합니다.
3.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설치된 안전장치 등의 기능을 임의로 해제하면 아니되며, 항상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전자와 운반 작업자간 신호를 통일하고, 정확한 의사전달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6.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급격한 조작 및 운반구에 올라타는 등 위험한 행동을 금지 하여야 합니다.
7.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